

「대학원 학칙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3. 11. 27. 개정 판 (시행 2023. 9. 1.) → 2023. 12. 18. 개정 판 (시행 2024. 3. 1.)

바뀜 1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25/compare?from=1490&to=1496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9:20:32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과정)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과정(이하 “석사과정”이라 한다)과 박사과정(이하 “박사과정”이라 한다),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(이하 “통합과정”이라 한다),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(이하 “학·석사 연계과정”이라 한다)을 두고 신학대학원, 경영대학원,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. <개정 2012-11-21> ② (협동과정)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~~원~~ 연~~계~~또~~는~~ 학~~원~~ 및 학~~원~~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.] ③ (외국인 단기과정)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 졸업하는 석사과정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22-09-05>	제2조(과정)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과정(이하 “석사과정”이라 한다)과 박사과정(이하 “박사과정”이라 한다),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(이하 “통합과정”이라 한다),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(이하 “학·석사 연계과정”이라 한다)을 두고 신학대학원, 경영대학원,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. <개정 2012-11-21> ② (협동과정)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~~원~~ 연~~계~~또~~는~~ 학~~원~~ 및 학~~원~~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.] ③ (외국인 단기과정)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 졸업하는 석사과정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22-09-05> ④(박사과정 신설 시 연구실적 기준) <신설 2023-12-18> <u>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시 관련분야 7명 이상 교원의 1/2이상은 설치학과(전공)개시일 이전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게재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확보해야 하며 연구실적 인정 범위는 본교 교원업적평가 규정의 평가 기준을 따른다.</u> 1) 인문·사회계열 : 4편 이상 2) 예·체능 계열 : 3편 이상 3) 자연과학, 공학, 의학 계열 : 6편 이상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대학원 학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2조(과정)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석사과정(이하 “석사과정”이라 한다)과 박사과정(이하 “박사과정”이라 한다),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(이하 “통합과정”이라 한다),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연계과정(이하 “학·석사 연계과정”이라 한다)을 두고 신학대학원, 경영대학원, 임상간호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둔다.
- ② (협동과정)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으로 둘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학~~원~~ 연~~계~~ 산 또는 학~~원~~ 연 및 학~~원~~ 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.]
- ③ (외국인 단기과정) 수업연한을 단축하여 조기 졸업하는 석사과정을 둘 수 있다.
- ④(박사과정 신설 시 연구실적 기준)
-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 시 관련분야 7명 이상 교원의 1/2이상은 설치학과(전공)개시일 이전 최근 5년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게재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확보해야 하며 연구실적 인정 범위는 본교 교원업적평가 규정의 평가 기준을 따른다.
- 1) 인문·사회계열 : 4편 이상
- 2) 예·체능 계열 : 3편 이상

3) 자연과학, 공학, 의학 계열 : 6편 이상

부 칙

이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